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9. 10. 19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년 10월 6일 마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9년 10월 7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4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(2009. 10. 19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 김 종 선

가. 개정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 개정 내용

- 1)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5조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분류체계를 단순화함
 - 가) 행정재산·보존재산 ⇒ 행정재산
 - 나) 잡종재산 ⇒ 일반재산
- 2) 주거용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사용료·대부료 기준을 완화하여 저소득 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(안 제25조제3항 제3호) : 주거용 건물이 점유한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을 적법 건물과 무허가 건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여 무허가

건물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

구 분	현 행	개 정
조 례	대부료의 요율은 기본 5%이나 주거용 건물에 대한 대부료는 2.5%로 조정(단,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)	주거용 건물에 대한 대부료 감경 규정에서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하는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동일한 요율 2.5% 적용

3) 재활용센터에 대한 대부료 감경규정 삽입함(안 제25조제4항 제10호) : 대부료의 요율 1% 적용 대상 :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」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대부료를 감경토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지원

4)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6조 및 제34조 개정에 따라 사용료(대부료) 조정 요율을 100분의 70으로 확대함(안 제30조) : 당해 대부기간의 대부료가 전년도 대부료 보다 100분의 100이상 증가한 경우 100분의 10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감액을 상향 조정

· 현행 : 용도에 따라 40% ~ 50% → 개정 : 70%로 확대

구 분	현 행	개 정
조 례	감액을 경작용 50%, 생산·연구·주거시설 45%, 기타 40%	용도에 관계없이 70%감액 일괄 적용

5) 신탁의 종류(안 제37조)
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42조 개정에 따라 토지신탁의 종류를 현행 “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”에서 “분양형·임대형·혼합형”으로 개정함

6) 법령 띄어쓰기 및 법률 용어 순화 등을 반영

가)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

나) “타용도”를 “다른 용도”로

다)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등 기타 법률순화 용어로 변경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: 명금길)

○ 동 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27일 법률 제9174호로 「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」과 2008년 5월19일 대통령령 제20772호로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이 일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관리·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하므로써 공유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출된 것임

< 개정된 주요내용>

(1) 안 제4장 제목과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는 “행정재산 및 보존 재산”이라는 용어를 “행정재산”으로 명칭을 단순화하여 통일

(2) 안 제21조에서는 “잡종재산”이라는 용어를 “일반재산”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

(3) 안 제25조제3항제3호에서는 그 동안 제외되었던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대부료율을 2.5%로 적용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고 같은 조 제4항제10호에서는 대형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2항에 의거 재활용센터를 설치 및 운영 하는 경우 대부료율을 1%로 인하 하는 규정을 신설

(4) 안 제30조에서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34조의 개정에 따라 사용대부료의 조정계수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확대

(5) 안 제37조에서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42조제3항의 개정예 따라 공유재산의 토지신탁 종류를 현행 “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”에서 “분양형 임대형, 혼합형 토지신탁으로 개정 하므로써 혼합형을 추가

(6) 그 밖에 전체적으로 현행 조례의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 일반 주민들이 읽기 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

[검토의견]

○ 동 개정조례안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예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고 일부 변경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본 조례의 전 조문에 “잡종재산”이라는 명칭을 “일반재산”으로 변경하므로써 잡종재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주거용 건물의 경우에 있어 건축허가를 받은 적법건물과 무허가건물에 대한 요율을 차등하게 적용하던 것을 적법건물과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의 대부료의 요율기준을 동일하게 5%에서 2.5%로 적용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하였으며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의거 재활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대부료 율을 1%로 인하하여 대형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기준 완화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 조정계수를 50%에서 70%로 확대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절차상으로도 입법예고 및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

저촉됨이 없어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사항 : 없 음